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 목표]

- 1. 성폭력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2. 성폭력 유형과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폭력 예방을 실천한다.
- 3. 성폭력 대응방법을 숙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 개념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의 정의 [제2조 3항])

성폭력

-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 강간 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
-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



성폭력의 유형

1.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 가슴,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2.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평가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



성폭력의 유형(계속)

3.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줌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유형

■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2020.3.30.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가 2016년 신설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2019년 처음 실시했으며, 앞으로 3년마다 진행함

- 조사대상: 장기요양 수급자 6,000명,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4,935명(미이용자 가족 제외),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장기요양요원 4,000명
- 조사내용: 수급자 가구형태, 연령, 건강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과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mark>장기요양요원 처우 현황</mark> 등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2020.3.30.보건복지부) (계속)

장기요양요원 처우

-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25.2%,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경험한 사람은 16.0%, '성희롱, 성폭력'은 9.1%로 장기요양요원 보호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확충('20년 4개소, 서울·경기·인천·울산), 향후 지속 확충 예정
 - * 건보공단에서 수급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급여이용 설명회 시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구해서 안 되는 사항 등 권익 관련 사항 안내



성폭력 예방이 필요한 사례

-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 몸을 쓰다듬는 경우
-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어르신의 얼굴,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
- 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 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
- 산책활동을 할 때 사람이 없는 둘만 있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1)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
-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
-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하기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기
- 어르신께서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하기
-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지
 않기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2)

-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 어르신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하기
-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어르신 및 그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하지 않기
- 관련 외부기관: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성폭력피해신고 ☎1899-3075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 (3):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이나 강연 시 꼭 나오는 질문
- " 농담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이 너무 민감하게 구는 상황엔 어떡하나요?"
- 농담이 당신의 아내나 여자 친구, 여동생, 엄마가 들어도 되는 말이라면 농담이고 아니면 성희롱이다.
-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
 - 1. 위계의 의한 갑질, 강제성의 성격을 띈다.
 - 2. 가해자를 매일 오랜 시간 마주하고 대화해야 한다.
 - 3. 재발과 악화 가능성이 무척 높다.
- 성희롱은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다양하게 유발할 수 있다.
- 여자 상사가 남자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까지 소수이다.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 (4) : 직장 내 성희롱을 대처하는 4가지 방법

1.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

사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을 시→노동청 신고→가해자 민/형사 고발

2. 증거 수집은 미리미리 하자

평소에 나눈 카톡, 이메일도 증거가 되며, 성희롱이 의심되는 말이 나왔을 때 타인과 같이 있을 때는이렇게 한다.

"부장님 요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희롱에 해당되는 거 아세요? 대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녹음 어플 켜도 괜찮을까요?"

성희롱 발언을 지속하거나, 욕설, 전화기를 빼앗으려는 등 폭력으로 이어지면 112 또는 119로 신고 (112보다 119가 훨씬 빨리 도착함 119의 경우 '여기 사람 다쳤다, 도와주세요, 휴대폰 GPS 위치확인에 동의합니다'라고만 하면 됨)

비상신고 어플을 미리 준비한다.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 (4) : 직장 내 성희롱을 대처하는 4가지 방법

3. 선처나 타협은 재발을 부를 뿐이다

많은 피해자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거나, 회사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피해나 불이익을 두려워해 흐지부지 넘어간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대처가 아니라, 가해자의 근절이다

내가 지금 성희롱을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거나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편하고 친근한 농담이 딸이나 자신의 아내에게 해도 괜찮은 지 생각해 봐야한다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 (5): 성인지 감수성



아빠는 직장인, 엄마는 가정주부?

→ 여학생 축구부, 바느질 하는 남학생 ■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

- 성인지 감수성은 인습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양성평등의 저울을 여러 분야에서 바로 세우려는 노력의 일환
- 일상 생활 속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문제점 등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